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31 발의연월일: 2020. 9. 7.

발 의 자:인재근・소병훈・송갑석

기동민 · 김원이 · 최혜영

최종유 • 강선우 • 이해식
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,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는 이른바 '사무장병원'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 데 그쳤지만,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되었음.

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「국민건 강보험법」에 근거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바,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,0 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.

그런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, 보건복지부,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,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, 경찰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3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·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(이하 이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실태조사의 시기・방법 및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제33조의3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 |
| | 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 |
| |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 |
| | 는 자가 개설・운영하는 의료 |
| | 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|
| | 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|
| | 바에 따라 조사(이하 이 조에 |
| | 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 |
| | 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|
| | <u>다.</u> |
| |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|
| | 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|
| | 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 |
| | 런 기관・법인 또는 단체 등에 |
| |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|
| | 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|
| |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|
| | <u>야 한다.</u> |
| | ③ 실태조사의 시기・방법 및 |
| |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|
| |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|
| | <u> 정한다.</u> |